

□ 「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업무 관리 규정」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<b>제2 조(정의)</b>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‘국제종합경기대회’ (이하 “국제종합대회”라 한다)란 국제올림픽위원회(IOC), 아시아올림픽평의회(OCA)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, 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로서 <u>유치신청도시</u>의 선정에 관한 권한이 국가올림픽위원회(NOC)에 있거나 유치신청에 NOC의 보증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는 대회를 말한다.</p> <p>2. ‘유치희망도시’란 국제종합대회의 국내유치를 희망하여 대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에 ‘<u>유치신청도시</u>’ 선정을 신청한 단일 또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자체”라 한다)를 말한다.</p> <p>3. ‘<u>유치신청도시</u>’란 체육회의 선정절차를 거쳐 <u>제1호의 국제스포츠기구에 한국을 대표하여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자체를 말한다.</u></p> <p>4. ‘유치도시’란 국제종합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가 <u>유치신청도시</u> 중 유치(후보)도시로의 권한을 부여한 지자체를 말한다.</p> <p>5. ‘개최도시’란 유치도시 중 주최 국제스포츠기구의 절차에 따라 개최지로 선정되어 개최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를 말한다.</p> <p>6. ‘대회유치위원회’란 유치희망도시, <u>유치신청도시</u> 및 유치도시가 대회 유치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을 말한다.</p> <p>7.~9. “생략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b>제2 조(정의)</b>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‘국제종합경기대회’ (이하 “국제종합대회”라 한다)란 국제올림픽위원회(IOC), 아시아올림픽평의회(OCA)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, 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로서 <u>유치추진도시</u>의 선정에 관한 권한이 국가올림픽위원회(NOC)에 있거나 유치신청에 NOC의 보증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는 대회를 말한다.</p> <p>2. ‘유치희망도시’란 국제종합대회의 국내유치를 희망하여 대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에 ‘<u>유치추진도시</u>’ 선정을 신청한 단일 또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자체”라 한다)를 말한다.</p> <p>3. ‘<u>유치추진도시</u>’란 체육회의 선정절차를 거쳐 <u>국제종합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지자체를 말한다.</u></p> <p>4. ‘유치도시’란 국제종합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가 <u>유치추진도시</u> 중 유치(후보)도시로의 권한을 부여한 지자체를 말한다.</p> <p>5. ‘개최도시’란 유치도시 중 주최 국제스포츠기구의 절차에 따라 개최지로 선정되어 개최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를 말한다.</p> <p>6. ‘대회유치위원회’란 유치희망도시, <u>유치추진도시</u> 및 유치도시가 대회 유치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을 말한다.</p> <p>7.~9.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10. ‘<u>간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</u>’란 <u>국제종합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규모, 비용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말한다.</u></p>	<p>· 유치신청도시 명칭 변경</p> <p>· 유치신청도시 명칭 변경</p> <p>· 유치신청도시 명칭 및 정의 변경. 유치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7조 신설</p> <p>· 유치신청도시 명칭 변경</p> <p>· 제4조제1항의 추가 제출서류에 대한 정의 추가</p>
<p><b>제3 조(기본원칙)</b> 국제종합대회의 국내유치가 올림픽운동의 확산 및</p>	<p><b>제3 조(기본원칙)</b> 국제종합대회의 국내유치가 올림픽운동의 확산 및</p>	

현행	개정(안)	비 고
<p>세계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 스포츠 활성화에 <u>공헌하기 위해 유치신청도시</u> 선정을 위한 기본원칙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생략”</li> <li>2. 체육회는 국제종합대회 개최 역량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<u>유치신청도시</u>를 선정하되,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</li> <li>3.~4. “생략”</li> </ol>	<p>세계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 스포츠 활성화에 <u>공헌할 수 있도록 유치추진도시</u> 선정을 위한 기본원칙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현행과 같음”</li> <li>2. 체육회는 국제종합대회 개최 역량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<u>유치추진도시</u>를 선정하되,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</li> <li>3.~4. “현행과 같음”</li> </o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자구 수정</li> <li>▪ 유치신청도시 명칭 변경</li> </ul>
<p><b>제 4 조(개최계획서의 제출 등) ①</b> 유치희망도시는 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~3. “생략”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 제1항제1호의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~3. “생략”</li> <li>4. 해당 대회 유치에 소요되는 재원 및 재원 조달계획</li> </ol> <p>5.~12. “생략”</p> <p>③ 유치희망도시는 해당도시에 대한 체육회의 평가활동 및 제반 정보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로 부담금 5,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. 이 부담금은 체육회 수입금으로 처리되며, <u>유치신청도시</u>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.</p>	<p><b>제 4 조(개최계획서의 제출 등) ①</b> 유치희망도시는 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~3. “현행과 같음”</li> <li>4. <u>간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</u></li> <li>5.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의회의 국제종합대회 유치관련 의결서(결의안, 동의안 등 포함)</u></li> </ol> <p>② 제1항제1호의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~3. “현행과 같음”</li> <li>4. 해당 대회 유치에 소요되는 재원 및 재원 조달계획 <u>(「국제경기대회 지원법」 등 관련 법에 따른 국고 지원 기준 충족여부 포함)</u></li> <li>5.~12. “현행과 같음”</li> </ol> <p>③ 유치희망도시는 해당도시에 대한 체육회의 평가활동 및 제반 정보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로 부담금 5,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. 이 부담금은 체육회 수입금으로 처리되며, <u>유치추진도시</u>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유치희망도시 제출서류 추가를 통한 체육회 선정절차 운영의 정책타당성 확보</li> <li>▪ 개최계획서를 통한 국고지원 사업의 기본 요건 충족 여부 확인</li> <li>▪ 유치신청도시 명칭 변경</li> </ul>
<p><b>제5조(선정절차) ①</b> <u>유치신청도시</u>는 국제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<u>대의원총회(이하 ‘총회’라 한다)에서 선정한다.</u></p> <p>② 국제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<u>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</u> 이사회에 제출한다.</p>	<p><b>제5조(선정절차) ①</b> <u>유치추진도시</u>는 국제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<u>대의원총회(이하 “총회”라 한다)의 의결로 선정한다.</u></p> <p>② 국제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<u>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유치희망도시의 유치 계획의 타당성, 정책적 적합성 및 국제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유치신청도시 명칭 변경</li> <li>▪ 자구 수정</li> <li>▪ 국제스포츠기구 선정절차를 준용하여, 현행 선정절차 상 주요</li> </ul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③ 이사회는 <u>유치희망도시에 대한 국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제출한다.</u></p> <p>④ 총회는 이사회가 제출한 <u>심의결과를 보고받고, 유치신청도시는</u>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<u>최종 선정</u>한다.</p> <p>1. <u>각 유치희망도시 설명(45분) 후 질의응답(15분) : 각 유치희망도시의</u> 공식대표는 6명으로 하고, 참관인의 수는 체육회가 정한다.</p> <p>2. 평가위원회의 <u>조사결과</u> 보고</p> <p>3. 대의원의 <u>무기명비밀투표</u></p> <p>4. <u>결과 발표</u></p> <p>5. <u>유치신청도시</u>와 체육회의 협약서 체결</p>	<p><u>로 심의하고, 그 의견을</u> 이사회에 제출한다.</p> <p>③ 이사회는 국제위원회의 <u>의견을 바탕으로 유치추진도시 선정(안)을 심의·의결한다.</u>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시 <u>유치희망도시로부터 유치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총회는 이사회가 제출한 <u>유치추진도시 선정(안)에 대하여</u>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<u>심의·의결</u>한다.</p> <p>1. <u>유치추진도시 선정(안)에 따른 해당 유치희망도시의 유치계획 발표(45분) 및 질의응답(15분) : 유치희망도시의</u> 공식대표는 6명으로 하고, 참관인의 수는 체육회가 정한다.</p> <p>2. 평가위원회의 <u>평가결과</u> 보고</p> <p>3. 대의원의 <u>무기명 비밀투표</u></p> <p>4. <u>투표결과 발표</u></p> <p>5. <u>유치추진도시</u>와 체육회의 협약서 체결</p>	<p>의사결정기구(국제위원회, 이사회, 총회)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통해 체계 개선</p> <p>·자구 수정</p> <p>·유치신청도시 명칭 변경</p>
<p><b>제7조(평가위원회의 임무)</b> ① 평가위원회는 유치희망도시가 제출한 <u>대회개최계획서</u>를 평가편람에 제시된 평가항목 및 기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다.</p> <p>② “생략”</p> <p>1.~2. “생략”</p>	<p><b>제7조(평가위원회의 임무)</b> ① 평가위원회는 유치희망도시가 제출한 <u>제4조제1항의 서류</u>를 평가편람에 제시된 평가항목 및 기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다.</p> <p>②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1.~2. “현행과 같음”</p>	<p>·평가대상서류 구체화</p>
<p><b>제9조(평가위원회의 보고서 제출)</b> 평가위원회는 개최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치희망도시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따른 종합평가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이를 국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평가위원회가 유치희망도시에 추가로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<u>최종자료를 접수한 날을 개최계획서를 접수한 날로 간주한다.</u></p>	<p><b>제9조(평가위원회의 보고서 제출)</b> 평가위원회는 개최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치희망도시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따른 종합평가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이를 국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평가위원회가 유치희망도시에 추가로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 <u>부득이하게 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와 연장 필요기간을 명시하여 국제위원회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국제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.</u></p>	<p>·보완자료 제출에 따른 보고서 최종 제출일 변경에 대하여 국제위원회가 승인·관리</p>
<p><b>제10조(협약서)</b> 체육회와 <u>유치신청도시</u> 간에 체결하는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</p>	<p><b>제10조(협약서)</b> 체육회와 <u>유치추진도시</u> 간에 체결하는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</p>	<p>·신설조항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</p> <p>·유치신청도시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하며, 협약 당사자는 이 규정에 따른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.</p> <p>1. “생략”</p> <p>2. <u>유치신청도시</u>로서 해당 국제스포츠기구에 제출할 대회개최신청서를 사전에 체육회에 제출, 승인 획득</p> <p>3.~7. “생략”</p> <p>8. 기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</p>	<p>하며, 협약 당사자는 이 규정에 따른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.</p> <p>1.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2. <u>유치추진도시</u>로서 해당 국제스포츠기구에 제출할 대회개최신청서를 사전에 체육회에 제출, 승인 획득</p> <p>3.~7.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8. <u>유치추진도시 선정 이후 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에 협의</u></p> <p>9. <u>이 규정 제13조에 따른 제재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수용할 의무</u></p> <p>10. 기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</p>	<p>명칭 변경</p> <p>· 유치신청도시 명칭 변경</p> <p>· 위반 수준에 따른 제재조치 단계 구체화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1조(정부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)</b></p> <p>① <u>유치추진도시</u>는 대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의 대회 유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, 그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정부 심의 결과가 조건부 승인인 경우, <u>유치추진도시</u>는 체육회와 협의하여 해당 조건을 반영하여 제4조제1항 제1호의 개최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. 단, 제4조제2항제4호의 경우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③ 정부 심의 결과 <u>유치추진도시</u>의 대회 개최계획이 승인되지 아니하거나 <u>유치추진도시</u>가 유치계획을 철회한 경우 체육회는 국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<u>유치추진도시</u>의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</p>	<p>· 선정절차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조항 신설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2조(국제스포츠기구 신청서 제출)</b></p> <p><u>유치추진도시</u>는 제11조에 따른 정부 승인을 득한 후 국제종합대회의 유치 신청 관련 서류를 체육회를 통해 해당 국제스포츠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· 선정절차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조항 신설</p>
<p><b>제11조(제재)</b> 체육회는 제2조2호부터 7호까지의 지자체 또는 위원회가 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, 사안이 경</p>	<p><b>제13조(제재)</b> ① <u>체육회</u>는 <u>국제스포츠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회 유치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성 확보와 국제기준 준수</u></p>	<p>·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</p> <p>· 유치추진도시에 대한 제재 추진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<u>미한 경우 경고 조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,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또는 위반사항이 중대할 경우,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으며 제재절차 및 세부 제재사항은 국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유치희망도시의 <u>유치신청도시</u> 신청 반려</li> <li>2. <u>유치신청도시</u>의 <u>유치신청도시</u> 자격 철회</li> <li>3. 유치도시 및 개최도시(관할 시·군·구)에 5년 범위 내에서 국제종합대회, 2년 범위 내에서 국내종합대회 및 종목별 전국규모 대회 유치 신청 자격 제한</li> </ol>	<p><u>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재를 행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 체육회는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자체 또는 위원회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.</li> <li>③ 체육회는 제2항의 지자체 또는 위원회가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국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제재를 할 수 있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유치희망도시의 <u>유치추진도시</u> 신청 반려</li> <li>2. <u>유치추진도시</u>의 <u>유치추진도시</u> 자격 철회</li> <li>3. 유치도시 및 개최도시(관할 시·군·구)에 5년 범위 내에서 국제종합대회, 2년 범위 내에서 국내종합대회 및 종목별 전국규모 대회 유치 신청 자격 제한</li> </ol> </li> <li>④ 제3항의 중대한 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체육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</li> <li>2. 유치추진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, 국제위원회,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</li> <li>3. 유치추진도시 선정 당시 제출한 제4조제1항 서류의 주요 내용을 체육회와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한 경우</li> <li>4. 평가 또는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</li> <li>5. 제10조의 협약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</li> <li>6. 그 밖에 이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/ol> </li> <li>⑤ 제재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.</li> </ol>	<p>근거 및 제재 기준·처리절차 세부화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<b>제12조(경비부담)</b> 제8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현지조사와 종목단체의 현지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체육회가 유치희망도시 부담금에서 지급한다.</p>	<p><b>제14조(경비부담)</b> 제8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현지조사와 종목단체의 현지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체육회가 유치희망도시 부담금에서 지급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</li> </ul>
<p><b>제12조의2(평가위원 등의 준수사항)</b> 평가위원회 위원, 종목단체의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사람 및 <u>유치신청도시</u>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, 유치희망도시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<b>제15조(평가위원 등의 준수사항)</b> 평가위원회 위원, 종목단체의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사람 및 <u>유치신청도시</u>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, 유치희망도시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</li> <li>▪ 유치신청도시 명칭 변경</li> </ul>
<p><b>제13조(준용)</b>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국제스포츠기구의 국제종합대회 개최도시 선정규정 및 절차를 준용하되, 불분명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</p>	<p><b>제16조(준용)</b>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국제스포츠기구의 국제종합대회 개최도시 선정규정 및 절차를 준용하되, 불분명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 (2026. 00. 00.)</b></p> <p><b>제1조(시행일)</b> 이 규정은 이사회 의 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b>제2조(경과조치)</b>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치신청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이 규정에 따른 유치추진도시로 본다.</p> <p><b>제3조(적용례)</b> 제2조에 따른 지자체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 이후의 절차 및 행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.</p>	